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94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 권칠승·민병덕·이병진

김준형 · 임호선 · 김남근

송옥주·강유정·문금주

임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형법」은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 「형사소송법」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6월의 기간이 도과하여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.

이에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여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기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30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형법 제328조제2항의 경우의 고소는 피해자가 동일한 사실관계 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30條(告訴期間) ① (생 략)	第230條(告訴期間) ① (현행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② 형법 제328조제2항의 경우의
	고소는 피해자가 동일한 사실관
	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
	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
	<u>다.</u>